

일시 : 2026. 10. 6.(화) 10:30

장소 : 가야금방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의 록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 2026. 10. 6.(화) 10:30

2. 회의장소 : 가야금방

3. 출 석 : 8명

4. 결 석 : 2명

5. 회의안건

1. 제1호 의안 : 회의공개 여부 결정의 건

2. 제2호 의안 :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6. 회의내용

발 언 자	회 의 진 행 사 항
	개회식, 위촉식, 부군수님 인사말씀 생략
법무팀장	다음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선출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라 호선 하도록 되어 있어,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위원 중에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규 위원	이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법무팀장	이호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법무팀장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법무팀장	이의가 없으면 이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유고 시를 대비하여 부위원장도 호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정이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법무팀장	정이환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법무팀장	그러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이호님, 부위원장으로 정이환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은 지정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인사말씀)
법무팀장	지금부터는 위원회 회의를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그럼 2026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법무팀장으로부터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의정활동비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팀장 설명)

위원장	법무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회의안건과 고령군 의정비 현황과 의정비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무팀장	오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그러면 오늘 결정한 금액이 4년 동안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5%라면 5% 이내에서 인상률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법무팀장	네. 2027년 월정수당은 이번 위원회에서 금액을 결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매년 적용할 인상 기준을 이번 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고,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 150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정수당은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2027년 첫해에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법무팀장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위원장	더 질문이 없으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p> <p>(1호) : 회의 공개 여부 결정</p> <p>(2호) :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건입니다.</p> <p>먼저, 안건 1호 <u>회의 공개 여부</u>에 대해 결정하겠습니다.</p> <p>진행방식은 공개와 비공개가 있습니다.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실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다만, 회의가 비공개되더라도 회의록은 군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의견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p>
부위원장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럼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p>다음은 안건 2호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p>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으로 법무팀장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법무팀장 설명)
위원장	<p>법무팀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p> <p>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p>
김영우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하면 2027년 월정수당은 얼마나 인상되니까?
법무팀장	3.5% 인상 시 월정수당은 월 약 189만 원 정도로, 월 약 6만 원 정도 인상됩니다.

한윤현 위원	저는 2027년 월정수당을 3.5%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정하면 별도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결정할 수 있어, 공청회나 여론조사로 인한 예산액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용빈 위원	법무팀장님, 여론조사를 할 경우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법무팀장	배부해 드린 서류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 8쪽을 보시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 하고 6백 5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창기 위원	저는 3.4% 정도로 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두 가지 의견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p>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먼저 알려드리면서,</p> <p>2027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가지 안 중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p>먼저,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4%만큼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거 수)
위원장	그러면, 2027년도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만큼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장	<p>참석위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2027년도 월정수당은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만큼 인상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p> <p>(의사봉 3타)</p> <p>따라서 2027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p>

위원장	다음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 금액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참고로 2028년부터 2030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현 위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상 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인상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동결하는 안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2분의 1 범위에서 인상하는 안과,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규 위원	저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위원장	참석위원 8명 전원이 찬성함에 따라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다음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월 150만원, 연 1,8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칠곡군을 제외한 도내 11개 군지역에서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활동비는 현재와 같이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더 이상 안건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은 의결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고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시고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법무팀장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